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 
격리관리로 산정방법 안내

## 1. 관련근거

-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25616호(2021. 11. 23.)
- 나. 의료기관정책과-7318호(2021.11. 24.)
- 다. 보험급여과-2498호(2020. 6. 16.)

2. 우리 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, 요양병원·시설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. (의료기관정책과-7318호, 2021. 11. 24.)

3. 이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로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로 산정방법 1부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의료기관정책과장



주무관 김원희 행정사무관 윤민수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1. 11. 26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894 (2021. 11. 26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보험급여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6 팩스번호 044-202-3934 / [bliss0710@korea.kr](mailto:bliss0710@korea.kr) / 비공개(5)